영 등 포 구 의 회
2004년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

2004. 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규모(총괄) ———— 240,207,52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계	당초예산	1차추경	간주처리		
합 계	240,207,525	240,207,525	203,595,699	22,861,341	13,750,485	0	
일반회계	199,309,463	199,309,463	169,900,000	18,794,198	10,615,265	0	
특별회계	40,898,062	40,898,062	33,695,699	4,067,143	3,135,220	0	
의료보호	62,060	62,060	53,943	8,117	0		
주민소득	1,209,210	1,209,210	863,730	345,480	0		
주 차 장	39,626,792	39,626,792	32,778,026	3,713,546	3,135,220		

○ 편성내역(명시이월) ———— 총 5,527,000천원

ㅇ 행정위원회 소관 : 300,000천원

· 폐교부지 매입비 ———— 300,000천원

ㅇ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 5,227,000천원

· 당산동 공장이적지 공원조성 ———— 2,400,000천원

· 신길동 뉴타운 계획 용역비 ———— 189,000천원

· 영등포벤처센터 건물 매입비 ———— 2,000,000천원

· 신길동 226~277간 도로개설공사 ———— 638,000천원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10쪽에 있는 일반행정비 , 일반행정비, 내우행정 청소년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의 폐교부지매입비 300,000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데 있습니다.

□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보와 구민의 농촌 체험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충남 장현 초등학교의 폐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추진중 충남 보령 교육청에서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년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2005년도에 추진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폐교부지 매입사업은 우리 구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의 확보와 구민의 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 10. 15 장현초교외 5개소의 폐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충남 보령에 있는 장현초교를 매입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구를 포함한 약 30여 단체·개인이 본 폐교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소유기관인 보령교육청에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보령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개매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폐교를 매입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보령교육청에서는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의 정리가 늦어져 아직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시 낙찰액 대비 공공성, 효율성 등 사업성을 재검토 후 응찰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청양군, 영암군 등 우리구 자매결연지를 포함한 여타지역의 폐교를 물색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를 위해 폐교부지 매입비의 명시이월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12. 9

보 고 자 : 김 찬 재